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99
----------	-------

발의연월일 : 2025. 8. 11.

발 의 자 : 서명옥 · 김형동 · 이현승
고동진 · 배준영 · 정연욱
김미애 · 박정하 · 주호영
김 건 · 서일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서는 담배의 범주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세 측면과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음.

이에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 역시 담배로 포괄해 제조·수입·판매·세율·청소년 보호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조세 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5조의2 등).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 “연초(煙草), 니코틴”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합성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이 함유된 담배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합성니코틴의 포함 여부 및 그 용량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1항제6호 중 “제25조의2제1항”을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호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제25조의2제2항”을 “제2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을 “연초, 니코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성니코틴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담배”란 <u>연초(煙草)의 잎을</u>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 <u>연초(煙草), 니코틴</u>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u>합성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이 함유된 담배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합성니코틴의 포함 여부 및 그 용량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u>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u>	④ <u>제1항 및 제2항</u> ----- -----

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 오차의 범위, 성분 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 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7. (생략)

② (생략)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

⑤ 제1항 및 제2항-----

-----.

제27조의2(벌칙)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벌칙)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5조의2제4항</u>에 따른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생략)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u>제25조의2제2항</u>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략) 제30조(몰수와 추정) ① 제27조·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 죄에 관련된 <u>연초의 잎</u>과 담배는 몰수한다. ② (생략)	3. <u>제25조의2제5항</u>----- ----- ----- ----- 4.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25조의2제3항</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몰수와 추정) ① ----- ----- -----<u>연초, 니코틴</u>----- -----. ② (현행과 같음)
--	---